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 등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73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7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2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아동수당 확대(황정아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4조제1항 등) ..	5
2.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수당 환수(황정아의원안 제16조제1항3호)	19
3. 아동학대범죄 의심자 등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소병훈의원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3

I. 개요

1.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57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5.

(3) 회 부 일 : 2024.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2.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1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0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Ⅱ. 검토의견

1. 아동수당 확대(황정아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4조제1항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황정아의원안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태년의원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황정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u> 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18세</u> ----- ----- <u>20만원</u> -----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19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아동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에 아동수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8세-----	<u>비자물가변동률</u>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9세-----
--	---	--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u>18세</u> ----- ----- ----- ----- ----- ----- ----- ----- -----.	② ----- ----- ----- ----- ----- ----- <u>19세</u> ----- -----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제7조(조사·질문)	제7조(조사·질문 등)

등) ①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8세-----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 ----- ----- ----- ----- -----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9세-----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 ----- ----- ----- ----- -----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¹⁾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 * 자료 : 보건복지부
-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확정의원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김태년의원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은 10만원을 지급하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함.

< 개정안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

	현행	확정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	<u>18세</u> 미만 아동	<u>19세</u> 미만 아동
월 지급액	10만원	<u>20만원</u>	10만원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1)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8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비해,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단위: 만원)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p.269~p.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들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년도 아동수당금액에 전국소비사물가변동률을 고시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아동수당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금액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²⁾.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9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7개국임.

< OECD 아동수당 지급 국가의 연령 구분 >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	한국
15세 이하	8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17세 이하	18	핀란드(16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18세 이상	4	일본(18세), 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 체코(25세)
합계	31	

자료: 보건복지부

2)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27.

- 한편, 기본 수급연령에 도달해도 아동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국가는 18개국임.

<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받을 경우, 지원연령을 확대하는 국가 >

국가	기본 수급연령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시	국가	기본 수급연령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시
아일랜드	16세 미만	18세 미만	리투아니아	18세 미만	23세 미만
영국	16세 미만	20세 미만	오스트리아	18세 미만	24세 미만
라트비아	16세 미만	20세 미만	그리스	18세 미만	24세 미만
스웨덴	16세 미만	21세 미만	폴란드	18세 미만	24세 미만
포르투갈	16세 미만	24세 미만	독일	18세 미만	25세 미만
스위스	16세 미만	25세 미만	룩셈부르크	18세 미만	25세 미만
슬로바키아	16세 미만	25세 미만	벨기에	18세 미만	25세 미만
이탈리아	18세 미만	22세 미만	에스토니아	19세 미만	20세 미만
헝가리	18세 미만	23세 미만	프랑스	20세 미만	연령제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6만 5,000원, 독일은 월 약 37만 1,000원, 영국은 약 18만원 등을 지급 중임.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4.6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65,0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71,0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5,000원 (4주: 180,000원) 주 29,800원 (4주: 119,2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583,000원 월 492,0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이상 30,000엔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131,300원, 월 262,300원 월 87,500원, 월 262,3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해외 사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있고, 연금 금액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유사 입법례로 「기초연금법」 등도 있음.

< 아동수당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해외 사례 >

연번	국가명	조정 방식
1	오스트리아	-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매년 조정('22.하반기부터 적용)
2	벨기에	- (왈론지역 및 브뤼셀 수도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 (플랑드르 지역) 2020년부터 자동연동제 폐지, 다만 매년 정해진 날짜에 고정비율로 변동시킴 - (독일어권 공동체 지역) 2020년부터 자동조정,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25%를 고려하여 매년 7월에 조정
3	핀란드	- 매년 통계청 산출 생활비지수에 따라 조정
4	프랑스	- 소비자물가 변동(담배 제외)에 따라 매년 4월 1일 조정
5	룩셈부르크	- 물가지수 연동 조정
6	슬로바키아	- 최저생계비 지수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복지가족부가 결정
7	슬로베니아	- 필수품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3월 조정
8	네덜란드	-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간 2회(1월, 7월) 조정
9	캐나다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10	호주	-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7월 1일 조정

* 자료 : 보건복지부

※ 정액지급국가 : 독일,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폴란드

< 연금 금액 결정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사례 >

구분	연금, 수당 등	금액 결정
물가상승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개인별 수급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산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가급여액은 고정금액

*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3~6만원), 장애아동수당(장애정도 및 기초·차상위·시설수급자 등 3~22만원)은 고정금액

□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 지급 금액이나 연령이 상이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별 비교 >

	전진숙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박민규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지 급 대 상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월 지 급 액	20만원	50만원	30만원	0~7세: 10만원 8~17세: 2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 참고로, 황정아의원안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연 평균 12조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김태년의원안의 경우는 연 평균 5.9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

< 황정아의원안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 항)	12.9	12.4	12.0	11.6	11.1	60.1	12.0
- 국비	9.8	9.4	9.1	8.8	8.4	45.4	9.1
- 지방비	3.2	3.0	2.9	2.8	2.7	14.7	2.9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김태년의원안 추가재정소요: 2025 ~ 2029년 >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	5.9	6.0	5.9	5.9	5.8	29.5	5.9
- 국비	4.5	4.5	4.5	4.4	4.4	22.2	4.5
- 지방비	1.4	1.5	1.4	1.4	1.4	7.2	1.4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지속 확대 중이고,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는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바,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성, 재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확대 중이고, 출산장려 측면에서 단순 현금성 지원 확대는 출산율 제고 등 실증효과가 낮거나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는 재정 소요가 크게 수반되므로 타 양육지원 제도와의 관계, 정책 효과성, 재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아동수당 인상액은 2,600원 수준³⁾으로 부모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금 외 현금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은 고정비용으로 지원 중이며, 다양한 복지사업과의 정합성, 재정의견 및 효과 분석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
기획재정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 지원 실시 중이며, 아동수당 대상·급여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야기
행정안전부	아동수당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⁴⁾ 이므로,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 대책 마련 및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경남·충북	아동수당 지급 확대 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 확대 필요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4년 5월)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년 3.6%, '25년 2.6% 적용 시 '25년 아동수당 102,600원 산출

4)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는 2019년 15조 1천억원에서 2023년 20조 1천억원으로 연 평균 7.3%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2.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수당 환수 (황정아의원안 제16조제1항제3호)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既)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⁵⁾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한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 부정수급으로 인한 아동수당 환수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20건의 환수 결정이 있었고, 그 금액은 2,100만원 수준임.

< 최근 3년간 아동수당 환수 현황 >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액(원)	환수납부금액(원)	환수율
2021년	2	1,406,320	1,206,320	85.8%
2022년	3	3,500,100	3,500,000	100.0%
2023년	20	21,018,050	5,806,050	27.6%

자료: 보건복지부

5)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은 현행의 아동수당 환수 사유에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서 아동학대 등 발생 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아동수당법」 제12조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아동복지법」(제4조제3항6))에 따라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아동수당법」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입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입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등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중단 및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정 보호 취지,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⁷⁾, 실행 가능성⁸⁾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아동학대를 이유로 기(既)지급된 사회복지 급여를 환수하는 다른 아동관련 지원 제도(가정양육수당, 생계급여, 장애아동수당 등)가 없다는 설명임.

8) 환수를 위한 소급 시점 특정이 어렵고, 특정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소요된다는 설명임.

3. 아동학대범죄 의심자 등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등 (소병훈의원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 신고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 판결 시 소급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② (생략) <u><신설></u>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u> ④ <u>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이 정지</u>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된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을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2.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아동의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
- 다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함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악화 등 아동 복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은 53~70% 수준, 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조치가 된 비율은 24~29% 수준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나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도 상당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판단 건수, 사건처리 조치 건수 >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신고 건수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 판단 건수 ⁹⁾	37,605 (69.7%)	27,971 (60.7%)	25,739 (53.1%)
아동학대 사례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¹⁰⁾	16,096 (29.8%)	12,483 (27.1%)	11,469 (23.6%)

자료: 보건복지부

9) 아동학대 판단 건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

10)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조치가 된 사례 건수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불기소 또는 무죄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6,096건	12,483건	11,469건
불기소(검찰)	908건(5.6%)	346건(2.8%)	505건(4.4%)
무죄(법원)	17건(0.1%)	13건(0.1%)	18건(0.2%)

(출처 :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동 내용은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건처리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추출한 비율로, 실제 사법기관의 정보와 다를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사유로 지급 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아동 양육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